

고려시대 국왕의 즉위의례

김철웅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육조교수, 한국중세사 전공
kimcw9964@naver.com

- I. 머리말
- II. 즉위 사례의 검토
- III. 즉위의례의 특징
- IV. 맺음말

I. 머리말

전근대 왕조의 통치 근간은 국왕이었다. 따라서 왕권의 안정적인 계승은 국가의 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후계자가 불분명한 경우 이로 인해 정국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왕에 관한 이해가 한 시대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그리하여 왕조의 지배자로서 국왕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 권위를 보장하여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이에 국왕의 즉위의례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¹⁾ 그러나 고려 국왕의 즉위의례에 대해서는 그리 주목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고려 국왕의 즉위의례에 대해서는 관정도량²⁾, 제석도량³⁾ 등이 즉위의례의 하나로 거행되었고, 즉위 후에 산천신에 봉작과 사면령이 있었음을⁴⁾ 언급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조선의 즉위의례를 검토하면서 고려의 즉위의례를 평가하였다.⁵⁾ 따라서 고려의 즉위의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금까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고려 국왕의 즉위의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료의 편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려 국왕의 즉위의례⁶⁾는 분명히

-
- 1) 신라의 즉위의례에 대해서는 나희라, 「신라의 卽位儀禮」, 『한국사연구』 116(2002); 채미하, 「한국고대의 궁중의례, 즉위의례와 조하례」, 『사학연구』 112(2013) 등의 연구가 있고, 조선의 경우는 奥村周司, 「李朝高宗の卽位について-その卽位儀禮と世界觀」,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3(1995); 민현구 외, 『조선시대 卽位儀禮와 朝賀儀禮의 연구』(문화재관리국, 1996); 김문식, 「국왕과 그 계승자들」, 『다양한 문화로 본 국가와 국왕』(국사편찬위원회, 2008); 김지영, 「조선시대 사위의례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1(2012); 김지영 외, 『즉위식, 국왕의 탄생』(돌베개, 2013) 등이 있다.
 - 2) 金明正, 「灌頂信仰에 對한 研究-高麗時代를 中心으로」, 『釋林』 11(1977); 서윤길, 『韓國密敎思想史』(운주사, 2006), 312-313쪽; 김수연, 「고려 관정도량의 사상적 배경과 특징」, 『韓國思想史學』 42(2012).
 - 3)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264-267쪽.
 - 4) 김철웅, 『한국중세의 吉禮와 雜祀』(경인문화사, 2007), 115-118쪽.
 - 5) 고려의 왕위계승 방법이나 즉위식을 비롯하여 통치를 합리화시키는 의례들은 패권적 질서를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지영, 앞의 논문, 16쪽.
 - 6) 충선왕은 즉위식에 앞서 '卽位儀'를 연습하였다. 『高麗史』 충선왕 충서. "(忠烈王)三十四年 [...] 七月己巳 忠烈王薨 [...] 癸丑 王幸壽寧宮 率百官 隸卽位儀." 즉위의례는 즉위식(협의로서의 즉위의례)과 즉위식을 둘러싼 부대 의식들을 모두 포함(광의로서의 즉위의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종록, 「조선시대 국왕의 즉위과정과 즉위의례」, 『조선시대 즉위의례와 조하례의 연구』(문화재 관리국·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6), 41쪽; 박례경, 「덕치의 상징체계로서의 유교국가의 즉위의례」, 『한국실학연구』 21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의식을 정리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즉위과정에 대한 단편적인 자료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려의 즉위의례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왕의 즉위 사례를 검토하여 고려의 국왕들은 어떤 의식 절차를 거쳐 즉위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려 즉위의례의 전체 상을 복원해 볼 것이다. 이러한 고려 즉위의례의 복원을 통해 고려 전후 시기의 즉위의례와 비교되는 고려만의 특징과 그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즉위 사례의 검토

즉위식은 신하와 백성들에게 새로운 군주가 탄생하였음을 선포하는 의례이자 새 군주로서 그 권위와 정통성을 인정받는 상징성을 가진다. 이러한 새 군주의 권위와 정통성은 무엇보다도 전(前) 국왕의 직계 혈연을 계승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리고 국왕은 미리 왕위 계승권자를 정하여 안정적인 왕위 이양을 준비해 둔다. 즉, 국왕은 원자(元子)를 미리 태자로 임명하여 부왕이 사망하면 그전에 미리 정해둔 왕위 계승권자인 태자가 다음 왕위에 오르도록 한다. 이러한 원자 계승은 가장 정상적인 즉위방식으로 여겨졌다. 이를 사위(嗣位), 전위(傳位)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 외에 선위(선양·양위), 추대 등에 의해서도 새로운 군주가 즉위하였다. 선위는 요 임금의 순에게 자리를 물려준 고사에서 보듯이 또한 정당한 왕위 계승 방법으로 여겨졌다.⁷⁾ 추대는 정변에 의해 전왕이 강제로 물러나고 후왕이 즉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위, 선위, 추대의 즉위 유형⁸⁾은 고려에도 나타난다.

고려는 475년 동안 34명의 국왕이 존재하였다. 그러면 국왕은 어떤

(2011), 159쪽 참조. 이 글에서도 즉위 당일의 의례는 ‘즉위식’으로, 즉위에 관련한 전반적인 의례는 ‘즉위의례’ 혹은 ‘즉위의례’로 표기하였다.

7) 이에 대해서는 태조의 「훈요」에서 확인된다. 『高麗史』 태조 26년 4월. “御內殿 召大匡 朴述希 親授訓要曰 朕聞大舜耕歷山終受堯禪 [...] 朕亦起自單平謬膺推戴.”

8) 태조의 「훈요」 3조에는 왕위 계승 방식으로 嗣位, 禪位, 推戴 등을 지적하고 있다. 『高麗史節要』 태조 26년 4월. “其三曰 傳國以嫡 雖曰常禮 然丹朱不肖 堯禪於舜 實爲公心 若元子不肖 [...] 與其兄弟之衆所推戴者 俾承大統.” 이에 「훈요」에 따라 고려의 즉위 방식을 嗣位, 禪位, 推戴로 구분하였다.

절차를 거쳐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을까.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의 흥례에 「사위」라 하여 즉위의례를 정해놓은 조선과 달리 고려의 예제를 정리한 『고려사』 예지에서는 즉위의례를 따로 두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고려사』 세가, 예지 「국훈」조, 그리고 『고려사절요』에 즉위과정이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즉위의례를 유추할 수 있는 즉위 사례를 검토하여 그 윤곽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우선 검토할 대상은 태조의 즉위 사례이다.

태조 왕건은 흥유, 배현경 등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그 다음날 철원의 포정전에서 왕위에 올랐다. 다음날 태조는 군신의 화합을 강조하는 조서를 반포하였고, 이에 군신의 배사(拜謝)가 있었다.⁹⁾ 태조의 즉위식은 자세하지는 않지만 의례의 요점은 조서 반포와 신하의 하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조서(頒詔書, 頒教書)는 이후의 사례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원종과 충렬왕이 즉위년에 제도(諸道)의 즉위 축하를 중지한¹⁰⁾ 것은 조서 반포와 관련이 있다. 조선의 경우 즉위 교서를 제도에 보내면 제도에서는 표전을 올려 즉위를 진하하였다.¹¹⁾ 이러한 조선의 사례로 본다면 고려의 즉위의례에서도 태조 이래로 반조서(반교서)와 제도의 즉위 축하가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검토할 대상은 혜종의 즉위 사례이다. 태조 26년 5월에 들어서 왕이 편치 못하자 정유일에 태자 무로 하여금 대신 정무를 보게 하였다. 10일 후인 병오일에 태조는 학사 김악에게는 유조(遺詔)를 쓰게 한 후에 흥(薨)하였다. 이에 왕규가 유명(遺命)을 선포하고 태자 무가 즉위하였다. 이틀 뒤인 무신일에 상정전에서 발상하고 유조를 선포하였다.¹²⁾

혜종의 즉위과정을 보면 즉위의 결정은 태조의 고명(유명·말명)으로 시작되었다. 『고려사』 세가에서 혜종이 “奉遺命即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³⁾ 혜종 이후 고종까지의 즉위를 보면 사위에서는 “奉遺命即位”,

9) 『高麗史』 태조 원년 6월 을묘·병진·정사.

10) 『高麗史』 원종 원년 5월 계사. “以時方盛農 除諸道來賀即位.”; 『高麗史』 충렬왕 즉위년 8월. “除諸道賀即位箋.”

11) 『世宗實錄』 흥례의식 「頒教書」. “承政院奉教書 分送各道 開讀如式 使臣及外官牧使以上 奉箋陳賀.”

12) 『高麗史』 태조 26년 5월 및 혜종 즉위년조; 『高麗史』 지18 예6 흥례 국훈, 태조 25년 5월조.

13) 『高麗史』 혜종. “(太祖)二十六年五月丙午 太祖薨 奉遺命即位.”

“奉遺詔(敎)即位”로, 선위는 “受內禪即位”로, 추대는 “奉王”, “迎王即位”, “奉迎即位”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원종 이후의 즉위에서는 유명·유교, 혹은 내선(內禪) 등의 즉위 명분을 생략한 채 단지 “즉위”라고만 기록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원 간섭기의 고려 왕위는 원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위의 경우 즉위의 명분은 선왕의 유명과 유조에 있었던 것이다.

전왕은 왕위 계승자와 몇 명의 대신을 불러 고명을 내린다. 이때 고명을 받은 신하들이 ‘고명대신’이다. 그리고 전왕은 유조(유교)를 작성하게 한다. 유조는 국왕의 고명을 작성한 조서였다. 즉, 유조는 고명에 의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¹⁴⁾ 전왕이 흥하면 고명대신은 유명을 백관들에게 알려 전왕의 사망과 승습을 선포한다. 고명을 근거로 작성한 유조는 즉위식에서 선포된다. 사왕(嗣王)은 전왕의 고명(유명) 혹은 유조를 명분으로 삼아 즉위하고 신하들은 새 왕의 명을 따르라는 명령을 받들어 왕위 계승을 인정하였다.¹⁵⁾ 이처럼 사위의 경우 선왕의 유명과 유조가 즉위의 가장 중요한 정당성을 확보해준다. 그러나 추대 즉위의 경우는 왕대비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¹⁶⁾ 대비는 왕실의 최고 어른이라는 명분으로 추대 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추대 즉위의 경우는 왕대비는 교지를 통해 즉위의 정당성을 확보해주었다.

한편 혜종은 태조가 흥한 날에 바로 즉위하였다. 당일 즉위는 후대의 즉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3대 정종은 혜종이 2년 9월 무신일에 죽자 같은 날에 즉위하였다. 그리고 광종과 성종, 순종은 각각 정종(定宗), 경종, 문종이 흥한 날 바로 왕위에 올랐다.¹⁷⁾ 그리고 예종은 숙종이 죽자 그날로 중광전에서 왕위에 올랐다.¹⁸⁾ 특별한 사유로 인해 몇 번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고려의 사왕은 당일에 즉위하였다. 고려 왕의 당일

14) 이러한 과정은 『國朝五禮儀』에서 확인할 수 있다. 『國朝五禮儀』 권7 흥례 국홀 고명. “上 召宰執大臣及近侍 面見發願命 王世子大臣等 同受願命 詔 大臣等退 作傳位遺敎.”

15) 『東文選』 권23 「睿王遺敎」. “權國事(仁王 諱) [...] 元良之資 辭於人望 宜承末命 以即王位.”

16) 『高麗史』 열전39 간신 이인임. “王見弒 太后及復興 欲立宗親 復興宣太后旨於仁任 仁任貪立幼主 謀竊國柄 欲立辛禡 [...] 仁任率百官 遂立禡.”; 『高麗史』 열전33 제신 김자수. “恭讓朝 [...] 上書曰 [...] 殿下潛德著聞 人心推戴 廓除異姓之禍 光復祖宗之業 皆奉玄陵大妃之命而行之 [...] 故即位之始 即封王大妃.”

17) 『高麗史節要』 권5 문종 37년 7월 신유. “薨于重光殿 是日 太子即位.”

18) 『高麗史』 예종 충서. “(肅宗)十年十月丙寅 肅宗薨 奉遺詔 即位於重光殿.”

즉위는 신라·조선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신라에서는 신왕(新王)의 즉위가 선왕의 상장(喪葬)이 모두 끝난 후에 치러졌다고 한다.¹⁹⁾ 조선의 경우에는 성복한 후에 즉위하였는데, 성복은 흥한 지 제6일에 거행하였으니 그 이후에 즉위식이 있었다.

요컨대 혜종의 즉위과정을 통해 드러난 즉위의례를 정리해 보면 ㉠ 전왕이 유명과 유조를 내려 사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 유명 혹은 유조에 근거해 흥한 당일에 사왕이 즉위하였다.

다음에 검토할 사례는 덕종 즉위과정이다. 현종 22년 5월 신미일에 왕이 죽자 같은 날에 덕종은 중광전에서 즉위하였다. 흥한 지 4일째 되는 날에 성복하였고 6월 병신일(26일째)에 선릉에 장사지내고 이틀 뒤에 상복을 벗었다. 다시 이틀 후에 경령전에 참배하고 왕위에 오른 것을 고하였다. 3일 뒤에는 신봉루에 나가 계간(鷄竿)을 게양하고 대사령을 내렸다.²⁰⁾ 덕종의 즉위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령전 참배와 대사령이다.

덕종은 경령전에 참배하여 왕위에 오른 것을 고하였으니 이는 즉위의례의 일부였음이 분명하다. 경령전에 즉위 사실을 고한 사례는 인종, 공민왕의 즉위 때도 확인된다. 그런데 인종은 즉위한 다음에 경령전에 즉위를 고한²¹⁾ 반면, 공민왕은 경령전에 먼저 배알한 후에 즉위하였다.²²⁾ 공민왕이 즉위 전에 경령전에 배알한 것은 원에서 귀국하여 즉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덕종과 인종의 사례처럼 고려의 사왕은 즉위 후에 경령전을 배알하였을 것이다. 경령전을 참배하고 즉위 사실을 고한 것은 왕위의 계승을 직계 조상에게 고하여 즉위의 정당성을 보장받겠다는 상징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경령전은 현종 때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²³⁾, 경령전 건립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즉위 고유를 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19) 권오영, 「고대 한국의 喪葬儀禮」, 『한국고대사연구』 20(2000), 13쪽; 채미하, 「신라의 凶禮 수용과 그 의미」, 『한국사상사학』 42(2012), 44쪽.

20) 『高麗史』 현종 22년 5월·6월 및 덕종 즉위년.

21) 『高麗史』 예종 17년 4월 병신. “睿宗薨 [...] 平章事李資謙奉王 卽位于重光殿 [...] 丁酉王詣景靈殿告卽位.”

22) 『高麗史』 공민왕 즉위년 12월. “庚子 王及公主 至自元 [...] 壬寅 謁景靈殿 卽位于康安殿.”; 『高麗史』 공민왕 원년 2월 병자. “宣宥境內曰 [...] 壬寅 承事景靈宮 踐位康安殿 衣冠禮樂 猶有古國之風.”

23) 김철웅,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 114(2009) 참조.

있다. 먼저 정종(定宗)이 원년에 현릉을 참배한 것은 즉위의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 9월에 즉위한 정종은 즉위 이후 첫째 정월에 태조릉인 현릉을 참배하기 위해 재계하였을 때 “인군의 요무” 운운한 것은²⁴⁾ 정종의 현릉 참배가 ‘인군’으로서, 그리고 ‘인군’을 인정받는 의례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정종의 현릉 참배는 즉위의례의 하나로 보인다. 그리고 성종 때 태묘가 건립되면서 고즉위례(告即位禮)는 태묘에서 거행했을 것이다. 신종은 즉위 후에 사왕이 태묘에 참배하는 예를 재상에게 묻고 있다.²⁵⁾ 창왕이 즉위한 후 전교령 윤소종은 재계하고 태묘에 즉위를 고해야 함을 아뢰고 있다.²⁶⁾ 그리고 공양왕도 태묘에 즉위를 고하고 있다.²⁷⁾

요컨대 즉위 후 국왕은 왕실 조상에게 그 사실을 고유하였는데 초기에는 태조릉인 현릉에서, 다음은 성종 때에 태묘가 건립되자 태묘에서, 그리고 현종 때에 경령전이 설치되자 덕종 이후에는 경령전 혹은 태묘에서 즉위 고유례를 거행하였다. 그런데 즉위 고유례의 중심은 아무래도 경령전인 듯하다. 인종이 왕위에 오른 후 직접 경령전에 가서 왕위에 오른 것을 고하고, 신하에게는 태묘와 9릉에 고한 사실에서 즉위 고유례가 경령전을 중심으로 거행되었음을 말해준다.²⁸⁾ 태묘보다는 경령전이 즉위를 고하는 가장 의미 있는 장소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령전에는 태조와 전왕의 직계 4대조를 봉안하고 있어서 사왕의 입장에서 왕실 혈통의 계승과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덕종의 즉위과정을 보면 사면이 즉위의례의 한 부분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위 후의 사면 의례는 「의봉문선사서의」에 의해 거행되었을

24) 『高麗史』 정종 원년 정월. “王將謁顯陵 致齋之夕 聞御殿東山松間 有呼王名 若曰 爾堯 存恤細民 人君之要務.” 후한의 명제와 장제는 上陵의 의례를 통해 천자가 되었음을 조상에게 보고하였다. 渡邊義浩 저, 김용천 옮김, 『후한 유교 국가의 성립』(동과서, 2011), 241-242쪽.

25) 『高麗史』 지26 여복1 輿輅 王輿輅. “神宗即位 問宰輔云 嗣王謁太廟 例乘上國所賜象輅 今未受賜 而卜禘有日 將修舊耶 抑新製乎 宰輔曰 宜用仁宗舊物 從之 二年 四月 金主賜車輅.”

26) 『高麗史』 열전33 윤소종. “辛昌立 陸典校令 與同僚奏 [...] 禮將祭散齋四日致齋三日 [...] 願自今日 致齋思誠 格于太廟 躬服袞冕 以告即位 以申孝思.”

27) 『高麗史』 공양왕 원년 11월. “己卯 王即位于壽昌宮 [...] 甲申 王親裸太廟 告即位.”

28) 『高麗史』 예종 17년 4월 병신. “即位于重光殿 [...] 丁酉 王詣景靈殿告即位 遣使告于太廟九陵.”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의식이 있기 이틀 전에 계간을 의봉문 동남쪽에 세운다.²⁹⁾ 계간(雞竿)은 금계간(金雞竿)으로 사면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물이었다.³⁰⁾ 이처럼 사면령은 계간을 계양하고 거행하였다. 덕종이 계간을 계양하고 사면령을 내린 이유는 이것이 즉위예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중국 왕조와 신라, 조선에서도 즉위식의 하나로 대사령을 내렸다.

사면령은 책봉 축하, 국상의 종결 등 여러 일로 시행되었는데, 즉위 후에는 즉위예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성종의 말처럼 즉위 후에 사면령을 내리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以布新恩”하려는 것이었다.³¹⁾ 그리하여 새로 즉위한 왕은 대사령을 내려 백성들에게 새 왕의 은혜를 베풀었다. 고려의 당악 〈어가행〉에 의하면 “조서를 내리자 계간이 높이 솟으니 군왕의 은혜가 천하에 고루 퍼지도다”³²⁾라고 하였다. 그런데 강중은 “전례에 따라”, “길한 날을 가려” 사면령을 내린다고³³⁾ 하였다. 이처럼 사면령은 “길한 날을 가려” 내렸기 때문에 즉위한 지 한참 뒤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면령이 늦은 이유는 전왕의 장례와도 관련이 있다. 전왕의 장례는 달을 날로 바꾸어 13일에 소상, 27일에 대상을 지냈다.³⁴⁾ 따라서 사면령은 대상 이후에 “길한 날을 가려” 내려졌을 것이다. 이러한 즉위 이후의 사면령은 죄를 용서하거나 포상의 은혜를 내림으로써 백성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與民更始)는 의미를 갖는다.³⁵⁾ 즉위 후 사면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목종 즉위 때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목종은 즉위년 12월에 위봉루에 거둥하여 사면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조세 면제,

29) 『高麗史』 지22 예10 가례4 「儀鳳門宣赦書儀」. “前二日 都校令 帥其屬 立金雞竿於儀鳳門之東南 設讀詔臺於雞竿之西儀鳳樓之南.”

30) 『隋書』 권25 지20 형법. “赦日 則武庫令設金雞及鼓於閭闔門外之右 勒集囚徒於闕前 搗鼓千聲 釋枷鎖焉.”; 『宋史』 지101 儀衛6 노부의복 雞竿. “附竿爲鷄形金飾 [...] 大禮畢麗正門肆赦則設之 [...] 一日 天鷄星動爲有赦 故王者以天鷄爲度 金鷄事 六朝已有之.”

31) 『高麗史』 성종 16년 10월 무오. “王疾大漸 召開寧君誦 親降誓言傳位 移御內天王寺 平章事王融 請頒赦 王曰 死生在天 何至釋有罪 枉求延命乎 且繼我者 何以布新恩 不許葬.”

32) 『高麗史』 지25 약2 당악 「어가행〈영〉」. “鶴書飛下 雞竿高聳 恩霈均寰宇.”

33) 『高麗史』 강종 원년 정월 병인. “制 登極之初 例覃恩有 當於二月下旬 擇吉頒赦.”

34) 고려 전기에 왕의 장례는 대개 16일부터 26일까지 기간이 걸렸다. 장례 기간은 하루를 한 달로 바꾸어 계산해서 거행했기 때문에 27일을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는 왕의 장례 기간이 길어졌다. 조선시대 국장의 장례 기간은 5개월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인호, 「고려시대 국왕의 장례절차와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29(2010), 280쪽 참조.

35) 『高麗史』 신종 즉위년 11월 경자. “御儀鳳樓 詔曰 [...] 視古哲王 寬刑宥罪 崇德報功 輕徭薄賦 爲理之要 莫過於此 故欲於中外 普被恩澤 與民更始.”

효자와 순순 표창, 관료에 대한 가급, 음직·봉작 수여, 신지 훈호 등이었다.³⁶⁾

요컨대, 덕종 즉위 사례를 통해 즉위례를 살펴보면 ㉠ 즉위 후에 경령전을 참배하여 즉위를 고하였다. 경령전 대신에 태묘에 배알한 사례도 보인다. 그리고 ㉡ 길일을 택해 사면령을 내렸다. 이때의 사면령은 ‘以布新恩’, ‘與民更始’의 의미가 있었다. 즉위에 따른 사면령은 전왕의 장례 후에 길한 날을 가려서 시행되었으므로 즉위 후 여러 달 뒤에 있게 되었다.

다음에 검토할 것은 문종의 즉위 사례이다. 정종(靖宗) 12년 5월 정유일에 병이 낫지 않자 아우 낙랑군 휘에게 전위한다는 조서를 내리고 흥하였다. 빈소를 선덕전으로 정하고 이곳에서 즉위하였다. 그리고 백관이 국새를 받들고 중광전으로 나아가 문종에게 조하하였다.³⁷⁾ 문종의 즉위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국새의 존재이다. 즉위식에서 국새가 새 왕에게 전달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더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삼중대광 [...] 상주국 모(위계정)는 [...] 고명 대신으로서 영릉(숙종)이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하던 날에 친히 옥새를 전하여 큰 기업을 도왔으므로 지금까지 사대부들 사이에는 지난날의 절개를 회상하는 자가 많다.³⁸⁾
- ② 예종 17년 4월 을미일에 왕의 병이 더해지자 [...] 한안인에 명하여 국새를 가져다 태자에게 주게 하였다. 유조에, “…… 末命에 따라 왕위에 오르라……”고 하였다. 병신일에 흥하자 빈소를 선정전에 마련하였다.³⁹⁾
- ③ 공양왕이 효사관에 가서 신우와 신창을 죽인 데 대해 고했다. [...] 공신의 상(賞)을 고하는 축문에, “…… 지난해 6월에 신창이 즉위하였을 때 말이 전국보를 차서 갑이 부서지고 열쇠가 끊어져 전국보가 튀어나와 땅에 뒹굴었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이異姓에 노하여 그 제사를 받지 않으려고 위엄을 보여 거절한 것입니다⁴⁰⁾”라고 하였다.

36) 『高麗史』 목종 즉위년 12월 임인. “御威鳳樓敕 褒孝順 洗痕累救疾病 文武官及僧徒加一級 國內神祇皆加勳號 仍賜內外大酺一日.”

37) 『高麗史』 정종 12년 5월 정유. “王疾彌留 召弟樂浪君徽 入臥內 詔令權摠國事 詔曰 [...] 內史令樂浪君徽 朕之愛弟也 [...] 宜傳大寶 [...] 是日薨 [...] 移殯于宣德殿.” 『高麗史』 문종. “(靖宗)十二年五月丁酉 靖宗薨 卽位于柩前 百官奉國璽 詣重光殿朝賀.”

38) 『東文選』 권23 교서, 「故門下侍中魏繼廷配享睿宗教書」. “三重大匡 [...] 上柱國某 [...] 惟願命大臣 屬英陵晏駕之時 方睿考飛龍之旦 親傳玉璽 方贊鴻基 至今搢紳之間 想昔風節者衆.”

39) 『高麗史』 예종 17년 4월 을미. “王疾革 [...] 王命韓安仁取國璽以授之 [...] 遣詔曰 [...] 宜承末命 以卽王位 凡軍國重事 並取嗣君處分 [...] 丙申 薨 殯于宣政殿.”

40) 『高麗史』 공양왕 원년 12월 계해. “王詣孝思觀 以誅禍昌 告于太祖 [...] 又告賞功臣文曰

즉위식에서 국새(옥새, 전국보)가 전달되고 있는 확실한 사례는 예종의 즉위과정(①)에서 보인다. 고명대신이었던 위계정은 숙종이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하던 날에 직접 옥새를 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인종의 사례(②)를 보면 예종이 인종에게 왕위를 잇도록 유명하고서 국새를 주도록 명하였다. 아마도 당시 인종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하였고 ‘왕위를 엿보는 자가 있었기’⁴¹⁾ 때문에 미리 국새를 전해줌으로써 전위의 명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처럼 예종은 인종에게 유명과 함께 국새를 하사함으로써 새 왕의 즉위를 공인하고 있다. 그러나 즉위 전에 미리 국새를 전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즉위 전에 국새가 전달되는 것은 추대와 같은 사례에서 등장한다. 추대의 경우 명목상으로 왕태후에 의해 즉위가 결정된다.⁴²⁾ 따라서 왕태후가 즉위 교서를 내리고 국새를 준다. 공양왕은 이성계 등에 의해 창왕 대신 왕으로 추대되었다. 즉위과정을 보면 전날에 흥국사에 모여 ‘입군(立君)’을 의논하였고 논란 끝에 정창군으로 결정하였다. 다음날 정비궁으로 가서 교서를 받고 정창군을 세웠다. 이때 정비는 정창군에게 국인을 내려주었다.⁴³⁾ 이처럼 추대의 경우 즉위는 명목상으로 태후(대비)에 의해 결정된다. 전왕의 폐출과 신왕의 즉위는 태후의 교서에 의해 공표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새의 수여도 태후가 하였다. 이렇게 추대 즉위에서 태후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태후가 전왕의 배후자로서 전왕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왕이 태후에 대해 ‘국왕신(國王臣)’이라는 자칭은 위례상의 관계일망정 고려의 태후가 임금보다 상위에 있음을 표징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⁴⁴⁾

자료 ③에서 창왕 때에 말이 전국보를 차서 갑이 깨진 것은 창왕의 즉위식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을 것이다. 창왕의 즉위식에서 있었던 말의

[...] 去歲六月 昌之立 馬蹏傳國寶 匣碎鎗折 寶躍出走地 祖宗怒異姓 不歆其祀 動威以絕之.”

41) 『高麗史節要』 권8 예종 17년 4월. “太子幼 王諸弟 頗有覬覦心 李資謙奉太子卽位於重光殿.”

42) 『高麗史』 열전50 창왕 즉위년 6월. “昌 下書曰, 我上王 請命于王太后 諭予小子曰若稽我忠烈王忠宣王忠肅王三代故事 傳位于汝 [...] 乃告于宗廟 越翌日辛亥 遂卽王位.”

43) 『高麗史』 공양왕 총서. “戊寅 遷禱于江陵 我太祖與判三司事沈德符 [...] 密直副使鄭道傳 會興國寺 大陳兵衛 議曰 [...] 定昌君瑤 神王七代孫 其族屬最近 當立 [...] 奉妃教 放昌于江華 迎立王 王驚懼而辭 妃手授以印.”

44) 이정란, 「고려 전기 태후의 이념적 지위와 太后權의 근거」, 『사학연구』 111(2013), 200쪽.

존재는 『세종실록』 오례 흉례의식 「사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즉위식에서 어보와 교서가 전달되는데 식장에는 위외와 어마(御馬)가 있었다. 자료 ③의 상황은 창왕의 즉위식에서 전국보를 전달하는 과정, 혹은 그 후에 벌어진 일이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하였듯이 국새는 즉위식에서 새 왕에게 전달되었다. 즉위식에서 국새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새는 왕권의 상징물이었다.⁴⁵⁾ 이러한 국새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공민왕 때에 있었다. 침의시중 유탁 등이 노국공주의 영전 공사를 반대하자 공민왕은 크게 노하여 시중 이춘부에게 국인을 봉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면서 국인을 “가지고 가서 덕이 있는 사람을 구하라. 내가 왕위를 사양하겠다”라고 하였다.⁴⁶⁾ 이러한 공민왕의 행위는 국새가 왕권의 상징물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세종실록』 오례에 의하면 성복은 6일째에 하였고, 성복례를 마친 후에 면복으로 갈아입고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성복을 마칠 때까지 왕세자로, 면복으로 갈아입은 뒤에는 사왕으로, 유교·대보를 받은 후에는 전하라고 지칭하였다.⁴⁷⁾ 이를 통해 보면 면복의 착용이 즉위식의 시작이며 유교·대보의 수수로 즉위가 완결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국새의 수수 여부는 곧 새 국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중요한 행위였다. 어보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⁴⁸⁾, 그중 하나가 ‘전국보라 하여 즉위식에서 사왕에게 전달되어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왕권의 승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상징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의 원 간섭기에 ‘전국보’는 그 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한편 문종은 즉위 후에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백관 하례의 사례를 보면 의종이 대관전에서 하례를 받을 때 신하들이 ‘만세삼호’하였다.⁴⁹⁾

45) 고구려에서도 국새는 왕권 계승의 상징물 역할을 하였다. 『三國史記』 고구려본기4 신대왕 1년 10월. “及次大王被弒 [...] 遣人迎致 及至於支留 跪獻國璽.”; 『三國史記』 고구려본기5 미천왕 1년 9월. “遂共廢王 [...] 遂迎王孫 上璽綬即王位.”

46) 『高麗史節要』 권28 공민왕 17년 8월. “王大怒 [...] 王 命侍中李春富 封國印 [...] 王曰 卿以予爲否德 不從予言 持此去 求有德者我太祖 初豈王孫哉 予乃遜位矣.”

47) 『世宗實錄』 「五禮」 凶禮儀式 嗣位. “成服禮訖 [...] 王世子釋衰服具冕服 判通禮引嗣王 由東門入就褥位北向立 [...] 領議政以遺教授嗣王 [...] 左議政以大寶授嗣王 嗣王受 [...] 殿下俯伏興平身 宗親及百官同.”

48) 고려에 어떤 어보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除授大寶가 확인된다. 『高麗史』 원종 12년 12월 기미. “盜竊除授大寶.”

고종 45년 3월에 강안전에서 백관의 축하를 받았는데 새로 즉위한 것처럼 하여 백관이 전정에 나열하여 절하고 만세를 외쳤다.⁵⁰⁾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새 국왕에게 백관은 '만세삼호'로 하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원 간섭기에 들어 만세가 천세로 개칭되었다.⁵¹⁾ 이는 조선까지 이어져 『세종실록』 「사위」의 백관조하에서 구호가 천세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은 강종의 즉위과정을 살펴보자. 희종 7년 12월, 최충헌을 죽이려다가 실패하여 강종이 최충헌에 의해 추대되었다. 즉위한 지 12일 후에 관정도장을 거행하였고, 관정도량 이후 11일 뒤에는 즉위를 맞아 사면할 뜻을 나타내었다.⁵²⁾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관정도장 개최는 즉위례의 하나로 생각된다.⁵³⁾

고려에서 관정도량이 확인되는 것은 숙종 6년 4월인데, 이때는 전란의 정조에 대비해 거행하였다.⁵⁴⁾ 인종 때는 묘청에 의해 궁궐 내에서 거행되었다.⁵⁵⁾ 그리고 강종은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경전에서 관정도장을 거행하였다. 고려시대의 관정도량은 전법수계(傳法受戒)의 뜻과 대관식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⁵⁶⁾ 원래 관정은 고대 인도 왕가의 대관의식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제왕이 즉위할 때 사해에서 길어온 물을 금 접시에 담아 군주의 머리에 뿌렸다.⁵⁷⁾ 이러한 관정의식은 불교와 함께 동아시아로 전파되었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즉위례로 거행한 관정은 강종 즉위 때 처음으로 확인된다. 강종 이후에 즉위와 관련하여 거행된 관정도량을 더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49) 『高麗史』의종 24년 1월 임자. “王受賀於大觀殿 親製臣僚賀表 宣示群臣 表曰〔…〕雖一比簡子之遊 萬歲三呼 胡不祝漢皇之壽 百官表賀.”

50) 『高麗史』고종 45년 3월 기묘. “王御康安殿 百官陳賀 如新即位 禮畢出 朴松庇金仁俊以時服 率諸功臣左右別抄神義軍都房等 入殿庭 羅拜 呼萬歲 發崔壇家貲 分給有差.”

51) 『高麗史』지23 예1 가례잡의 중동팔관회, “忠烈王元年十一月庚辰 幸本闕 設八關會 改金龍山額 聖壽萬年四字 爲慶曆千秋 其一人有慶 八表來庭 天下太平等字 皆改之 呼萬歲 爲呼千歲 輦路 禁鋪黃土”

52) 『高麗史』희종 7년 12월 및 『高麗史』강종 원년 1월·2월.

53) 이에 대해서는 金明正, 앞의 논문; 서윤길, 앞의 책, 참조.

54) 『高麗史』지8 오행2 목 숙종 6년 4월 신축. “太史奏 蟲食松 此兵徵也 宜行灌頂文豆婁寶星等道場.”

55) 『高麗史』인종 5년 3월 갑진. “西京妖僧妙清 日者白壽翰說王 設灌頂道場于常安殿.”

56) 洪潤植, 「불교행사의 성행」, 『한국사』 16(국사편찬위원회, 1984), 182-183쪽.

57) 일본 중세의 천황 즉위에서도 관정이 거행되었음은 松本郁代, 『中世王權と即位灌頂-聖教のなかの歴史敘述』(森話社, 2005); 上川通夫, 「中世の即位儀禮と佛教」, 『日本中世佛教形成史論』(校倉書房, 2007) 참조.

원종 원년 4월 무오일에 왕이 강안전에서 즉위하였다. 왕이 관정을 하고, 경녕전에서 보살계를 받았다. 강안전에 납시어 백관의 조하를 받았다. 후에 황의를 입고 통상에 앉아 남면하였다.⁵⁸⁾

원종 10년 12월 기묘일에 또 내원당에서 관정도장을 열었다.⁵⁹⁾

충렬왕 즉위년 9월 갑오일에 본궐에서 친히 관정도장을 열었다.⁶⁰⁾

충선왕 복위년 8월 갑인일에 왕이 자포(紫袍)를 입고 강안전에서 관정도장을 열었다. 경령전에 사위를 고하고 수녕궁으로 가서 즉위하였고 군신의 조하를 받았다.⁶¹⁾

원종은 원에 가 있어서 고종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이듬해 2월에 귀국길에 올라 3월 갑신에 도착하였으며, 다음 달 무오일에 즉위했다. 원종은 강안전에서 즉위하고 자리를 경녕전으로 옮겨 관정하고 보살계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강안전으로 돌아와 백관의 축하를 받았다. 이처럼 원종은 즉위식 중에 관정도장을 열고, 10년 12월에도 관정도장을 열었다. 이때 관정도장을 개최한 데는 원종의 강제 퇴위와 복위라는 특별한 상황이 작용하였다. 즉, 이해 6월에 임연이 반란을 일으켜 원종을 폐하고 안경공 창을 옹립하였으나 이 일은 원에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원의 압력으로 11월 갑자일에 원종이 복위하였다. 원종은 복위한 지 4일 뒤인 정묘일에 불정도량을 열고, 12월 병자일에 사면을 내렸으며 정축일에는 소재도량을, 기묘일에는 관정도량을 열었다. 이러한 일련의 불교 도량들은 원종의 복위와 관련하여 개최하였을 것이다. 즉, 원종은 즉위 때와 마찬가지로 복위의례의 하나로 관정도량을 거행했던 것이다.

원종에 이어 즉위한 충렬왕도 즉위 후에 관정도량을 열었다. 원종이 15년 6월에 홍하자 충렬왕은 8월에 귀국하여 즉위하였다. 9월 을유일에 원종의 장례를 마치고 상복을 벗었다. 임진일에 원에서 호종하던 신하들에게 상을 내렸고 갑오일에 친히 관정도량을 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충렬왕이 즉위 후에 관정도량을 연 것은 원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즉위의례의 하나였을 것이다.

58) 『高麗史』 원종 원년 4월 무오. “王卽位于康安殿 灌頂 受菩薩戒于慶寧殿 御康安殿 受百官朝賀 後著黃衣坐龍床南面 東里大波透 上殿據床東面 太孫公侯伯宰樞文武兩班參上 以次入殿庭 參外立殿門外 上表行禮呼萬歲禮畢 王入閣 命太孫 宴客使 僕射以下兩班侍宴 [...] 五月 [...] 癸巳 以時方盛農除諸道來賀卽位.”

59) 『高麗史』 원종 10년 12월 기묘. “又設灌頂道場于內願堂.”

60) 『高麗史』 충렬왕 즉위년 9월 갑오. “親設灌頂道場于本闕.”

61) 『高麗史』 충선왕 복위년 8월 갑인. “王服紫袍 設灌頂道場于康安殿 詣景靈殿 告嗣位 [...] 至壽寧宮卽位.”

충렬왕 사후에 복위한 충선왕도 관정도량을 열었다. 다만 그전과는 달리 관정도량을 먼저 거행한 후에 즉위하였다. 이처럼 강종, 원종, 충렬왕, 충선왕 등은 즉위나 복위 후에 관정도량을 거행하였다. 즉위의례의 하나로 관정도량을 거행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한편 고종 말년에 몽골과 강화가 성립되었는데, 그 이후 고려 왕의 즉위과정은 원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먼저 몽골 측에서는 고종 사후에 원종을 번왕(藩王)의 예로 대우하고 귀국할 때는 다루가치가 따라가게 하였다.⁶²⁾ 원종 원년 8월에 원에서 조서를 보내왔다. 그 내용은 '중통'으로 개원한 사실, 의관 제도는 고려의 풍속을 따를 것, 호부(虎符)와 국왕인을 하사한다는 것이었다.⁶³⁾ 이 조서에서 원 세조는 "사경(賜卿)"이라 하여 고려 왕이 원의 신하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왕인을 하사하였다. 그런데 원에서 하사받은 국왕인은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 이전에 송, 요, 금이 고려 국왕을 책봉하고 인수(印綬)를 하사하였는데, 이는 양국 간의 의례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어서 고려의 전국보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은 고려 국왕에게 인수를 내림으로써 왕위의 승인을 확인하고 있으며 인수의 회수는 곧 국왕권의 박탈을 의미하였다.⁶⁴⁾ 원에서는 고려 국왕에게 금인을 하사하여 고려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상징으로 삼았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하사받은 금인인 국왕인을 국새로 삼고 전국보로 전달하여 왕위 계승을 공식화하였다. 원에 하사한 국왕인⁶⁵⁾은 원 간섭기 이후에 전국인⁶⁶⁾, 국인⁶⁷⁾, 국새⁶⁸⁾로 지칭되어 사왕에게

62) 『高麗史』 원종 원년 3월. “本國以高宗薨告 乃命達魯花赤東里大等護其行 歸國 江淮宣撫使趙良弼 言于皇弟曰 [...] 宜厚其館穀 待以藩王之禮 今聞其父已死 誠能立俛爲王 遣送還國 必感恩戴德.”

63) 『高麗史』 원종 원년 8월 임자. “一曰 [...] 今賜卿虎符國王之印 并衣段弓刀等物”

64) 『高麗史』 충렬왕 24년 8월 임신. “王錢于金郊酒酣 字魯兀以帝命 取國王印 授王.”; 『高麗史』 충선왕 즉위년 8월 임신. “太上王錢于金郊酒酣 使臣字魯兀 以帝命 取國王印 授逸壽王 於是 太上王復位.”

65) 『元史』 표3 제왕표. “駙馬高麗國王 藩王 [...] 金印獸紐.”; 『高麗史』 충렬왕 4년 7월 임신. “帝賜王 海東青一連 駙馬金印 鞍馬.”; 『高麗史』 충렬왕 7년 3월 을묘. “將軍盧英 還自元 帝賜駙馬國王宣命征東行中書省印 先是 王奏曰 臣既尙公主 乞改宣命 益駙馬二字 帝許之.”

66) 『高麗史』 충숙왕 즉위년 5월 병오. “五年 [...] 五月 [...] 丙午 王下教曰 [...] 已於三月二十四日 受傳國印.”

67) 『高麗史』 충혜왕 총서. “十六年十月 忠肅王奏請傳位 十七年二月壬午朔 [...] 遣遺客省副使七十堅來 取國王印 癸巳 [...] 西河君任子松萬戶權謙等 從七十堅 齎國印如元 丁未 帝御奎章閣授王國印.”

수여되었다. 이처럼 원 간섭기 이후 하사받은 금인이 고려의 전국인이 되었다. 조선의 전국보도 이와 같아 명에서 하사한 것이었다.⁶⁹⁾

널리 알려진 대로 고려 왕들은 원에 의해 즉위와 복위를 반복하였다. 원 간섭기의 즉위의례는 충렬왕의 즉위 사례⁷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종 15년 6월 계해일에 제상궁에서 “나의 원지는 […] 지금 원에 있어 직접 명을 받지 못한다. 모든 신민들은 사왕의 명을 받들라”고 유조하였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원종은 원에 표문을 올려 세자 심이 새 국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국왕 승습을 요청하였다.⁷¹⁾ 원종이 훗날 다음날 본궐에 모인 백관은 유조에 따라 원에 있는 세자를 왕으로 받들었다. 이에 세자는 원에서 왕으로 책봉받고 8월에 고려로 돌아왔다. 이때 황제의 조서를 가진 사신도 함께 왔다. 충렬왕은 제상궁으로 가서 원종의 빈전에 참배하였고, 즉위의례는 다음날 거행되었다. 먼저 충렬왕은 강안전에서, “무릇 고려 국왕에게 소속된 대소 관원들은 모두 다 그의 통제를 받으라”는 원 황제의 조서를 받았다. 조서를 받은 후에 경령전에 참배하였고 돌아와 강안전에서 즉위하였다. 그리고 신하들의 축하를 받은 후에 조사(詔使)를 위하여 연회를 베푸는 것으로 즉위식은 마무리되었다.⁷²⁾ 이처럼 충렬왕의 즉위는 고려의 승습 요청과 원의 책봉으로 결정되었으며 즉위식은 황제 조서의 반포로 시작되었다. 충렬왕은 원의 책봉을 통해 왕권 계승을 인정받고 즉위식에서 원의 승습 조서가 공표됨으로써 국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 황제는 고려 사왕에게 전국보를 수여하였다.

요컨대 원 간섭기의 즉위의례를 보면 원 황제가 사왕을 책봉하고 국새를 수여한다. 황제의 책봉 조서는 즉위식에서 공표된다. 고려의

68) 『高麗史』 충혜왕 2년 2월 갑자. “伯祥收國璽封諸庫 王遂如元.”

69) 조선의 어보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그중 조선 國璽는 명에서 받은 것으로 ‘朝鮮國王之印’이라 새겨져 있었으며 이를 傳國寶·大寶라고 하여 嗣位 때에 세자에게 주었다. 『大典會通』 권3 예전 세보. “大寶 […] 施命之寶…….”; 『林下筆記』 권35 薛荔新志, “我東傳國寶 皇明所賜也 其文曰 朝鮮國王之印 […] 丙子爲清所奪.”

70) 『高麗史』 원종 15년 6월 계해 및 『高麗史』 충렬왕 즉위년.

71) 『高麗史』 원종 15년 6월 계해. “王薨于堤上宮 在位十五年 壽五十六 遺詔曰 […] 惟予元子 […] 今在上朝 未獲親命 凡爾臣民 聽受嗣王之命 無墜前寧之烈 […] 又上遺表于元 且言 世子謹 孝謹可付後事.”

72) 『高麗史』 충렬왕, “十五年 […] 六月癸亥 元宗薨 […] 秋七月 元遣同知上都留守事張煥册爲王 八月 […] 戊辰 王至自元 […] 謁殯殿 己巳 […] 受詔于康安殿 […] 王受詔畢 謁景靈殿 還御康安殿 服黃袍即位 受群臣朝賀 仍宴詔使.”

왕위는 원에 의해 즉위와 퇴위, 복위가 결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 황제에 의해 국새의 박탈과 수여를 통해 왕권의 이양을 상징화하였다.

III. 즉위의례의 특징

지금까지 즉위과정의 검토를 통해 확인한 고려 왕의 즉위의례는 대체로 고명(유명) → 홍 → 즉위식 → 반조서(頒詔書) → 고즉위례(告卽位禮) → 대사(大赦)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위식은 홍 당일에 특정한 장소에서 거행되는데 이곳에서 유명 혹은 유조가 선포되고 전국보가 전달되며 백관의 하례로 의식은 마무리된다. 즉위식 후에 즉위 조서(교서)를 반포하는데 여러 도에서는 즉위를 축하하는 표전을 올린다. 그리고 즉위 사실을 경령전이나 태묘에 알리며 길일에 대사를 내린다. 이러한 일련의 즉위의례는 신라와 조선의 경우와 비교되는 고려 즉위의례의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① 전왕이 홍한 당일에 바로 즉위식이 열린다.

표1을 보면 몇 차례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사왕은 사위, 선위, 추대 등을 막론하고 당일에 즉위하였다. 그런데 당일 즉위의 예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선종은 순종이 문종 국상 중 상차에서 죽자 다음날 즉위하였다. 연이은 국상 때문에 차마 당일에 즉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숙종은 헌종의 양위 교서를 받고 이를 사양하다가 다음날 즉위하였다. 헌종의 양위 교서와 숙종의 사양은 형식적인 정치행위였다. 숙종은 정변 당일에 추대가 아닌 선위의 방식을 취하여 즉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고종은 강종이 야경에 홍하자 그 다음날 즉위한 것이다.

고려 사왕의 당일 즉위는 신라, 조선과 차이를 보인다. 신라에서는 신왕(新王)의 즉위가 선왕의 상장이 모두 끝난 후에 치러졌다.⁷³⁾ 그리고 조선의 경우 『세종실록』 오례에 의하면 성복은 6일째에 하였고, 성복례를 마친 후에 면복으로 갈아입고 즉위식을 거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고려 왕의 당일 즉위는 중국의 사례에 보인다. 즉, 전한(前漢) 시기에는 무제가 당일에 즉위하고, 후한의 12황제 중 6황제가 당일에 즉위하였

73) 권오영, 앞의 논문, 13쪽; 채미하, 앞의 논문, 44쪽.

다.⁷⁴⁾ 아마도 고려 왕의 당일 즉위는 한대(漢代)의 사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1-고려 국왕의 즉위 장소와 즉위일

왕대	왕명	전왕(前王) 홍소(曁所)	전왕 빈전	즉위 장소	즉위일	즉위 유형
1	태조			포정전	정변 당일	추대
2	혜종	신덕전	상정전	신덕전	홍 당일	사위
3	정종	중광전	?	?	홍 당일	추대
4	광종	제석원	?	?	홍 당일	양위
5	경종	정침	?	?	홍 당일	사위
6	성종	?	?	?	양위 당일	양위
7	목종	?	?	?	양위 당일	양위
8	현종	적성현	?	연충전	폐위 당일	추대
9	덕종	중광전	중광전	중광전	홍 당일	사위
10	정종	연영전	선덕전	중광전	홍 당일	사위
11	문종	대내	선덕전	선덕전	홍 당일	사위
12	순종	중광전	선덕전	?	홍 당일	사위
13	선종	선덕전	선덕전	선정전	홍 익일	양위
14	현종	연영전	선덕전	중광전	홍 당일	사위
15	숙종	홍성궁	?	중광전	교서 익일	추대
16	예종	장평문	선덕전	중광전	홍 당일	사위
17	인종	?	선정전	중광전	홍 당일	사위
18	의종	보화전	건시전	대관전	홍 당일	사위
19	명종	경주 근원사	?	대관전	폐위 당일	추대
20	신종	창락궁	?	대관전	폐위 당일	추대
21	희종	덕양후 집	정안궁	대관전	양위 당일	양위
22	강종	법천정사	낙진궁	강안전	폐위 당일	추대
23	고종	수창궁 화평전	?	강안전	홍 익일	사위
24	원종	유경 집	?	강안전	귀국 후	사위
25	충렬왕	제상궁	제상궁	강안전	귀국 후	사위·복위
26	충선왕	신호사	숙비김씨 집	강안전	귀국 후	양위·복위
27	충숙왕	연경 저택	숙비궁	연경궁	귀국 후	양위·복위
28	충혜왕	침전	?	강안전	귀국 후	양위·복위
29	충목왕	원 악양현	?	?	귀국 후	사위
30	충정왕	김영돈 집	?	강안전	귀국 후	사위
31	공민왕	강화	?	강안전	귀국 후	양위
32	우왕	?	보방	?	홍 3일 후	사위
33	창왕	강릉	?	?	폐위 익일	추대
34	공양왕	강화	?	수창궁	폐위 당일	추대

74) Howard J. Wechsler 저, 임대회 역, 『비단같은 주옥같은 정치』(고즈윈, 2005), 197쪽.

② 즉위식 장소는 주로 편전이였다.

고려 왕의 즉위는 '구전즉위(樞前卽位)'가 아니었다. 표1에서 확인되듯이 고려의 즉위식은 대체로 홍소(薨所)나 빈전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거행되었다. 혜종은 신덕전에서 즉위하였으며, 3대 정종 이후의 즉위 장소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다. 연충전에서 즉위한 현종, 선정전에서 즉위한 선종, 연경궁에서 즉위한 충숙왕 등의 사례를 제외하고 보면 즉위 장소가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인종 때까지는 중광전(인종 이후 강안전)에서, 의종-희종 시기에는 대관전(인종 이전의 건덕전), 강종 이후는 강안전(중광전)에서 즉위하였다.

중광전은 고려 초부터 등장하는데, 이때는 침전이였다. 그런데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략으로 개경 궁궐이 소실되어 다시 중수한 이후에는 중광전이 침전에서 확장하여 별전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서공은 중광전을 중수하여 별전으로 바꾸었다고 하였다.⁷⁵⁾ 그리고 중광전 중수 후의 기록을 보면 중광전은 별전 혹은 별궁으로서 상당한 규모를 가진 공간이었으며 여기에서 각종 행사와 의례가 자주 열렸다.⁷⁶⁾ 중광전은 인종 19년에 강안전으로 개칭되었다. 강안전에서 어떻게 즉위식이 거행되었는지는 원종의 즉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이 강안전에서 왕위에 올랐다. 경녕전에서 관정하고 보살계를 받고 강안전에서 나와 백관의 축하를 받았다. 그런 다음 황의를 입고 용상에 앉자 남쪽을 향하였다. 속리대, 파투는 강안전 위에 올라 의자에 앉아서 동쪽으로 향하였으며 태손, 재상들과 양반의 참상 등은 차례로 강안전 뜰에 들어서고 참외들은 전문 밖에 섰다. 표문을 올리고 예식을 거행한 후 만세를 불렀다. 예식이 끝나자 왕은 각으로 들어갔다.⁷⁷⁾

즉위식을 거행할 때에 태자와 재상, 그리고 양반의 참상 이상은 전정(殿庭)에서, 참외들은 전문 밖에서 참석하였다. 이처럼 강안전(중광전)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 주요 의례가 거행되었는데, 즉위식도 여기에서 열렸다.

대관전(건덕전)에서도 즉위식이 몇 차례 열렸다. 대관전은 제2정전으

75) 『高麗圖經』 궁전2 장경전. “長慶重光宣政三殿 舊記雖載其名 今聞更修重光長慶 易爲別殿.”

76) 『高麗史』 문종 26년 2월 갑술. “特設燃燈會於重光殿.”; 『高麗史』 예종 4년 3월 경술. “御重光殿 閱神騎軍.”; 『陶隱集』 권3 「丁未十月二十九日扈駕康安殿(是日嘉禮)」.

77) 『高麗史』 원종 원년 4월 무오.

로 각종 의례와 행사가 거행되었다.⁷⁸⁾ 대관전의 전정은 의례를 거행할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⁷⁹⁾ 대관전에는 태조가 「훈요」에서 강조한 『서경』 무일편이 게시되어 있었다.⁸⁰⁾ 따라서 사왕에게 대관전은 태조 이래의 왕업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고려의 즉위식 장소는 신라, 조선과 차이가 있다.⁸¹⁾ 조선의 즉위식은 빈전이 있는 근정전에서 거행하였다.⁸²⁾ 한편 중국 전한 초기에는 즉위의례가 고조의 묘에서 거행되었고 소제 무렵부터 구전에서 행하기 시작하여 후한시대까지 이어졌다.⁸³⁾ 이들 왕조의 즉위와 달리 고려에서는 빈전에서 거행된 경우는 몇 차례 되지 않는다. 고려에서는 빈전이 아니라 대체로 중광전, 대관전 등 특정한 장소에서 거행되었다. 고려에서 즉위식은 빈전과 별도로 거행되고 있었다.

③ 즉위식 후에 경령전을 참배하여 즉위를 고하였다.

경령전은 태조와 선왕의 직계 4대조의 진영을 모신 사당이였다. 따라서 선왕과 사왕에게는 태묘보다 경령전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태묘에 배알한 사례도 보이긴 하지만 고즉위례의 중심은 경령전 참배였다. 이것은 조선의 경우에 종묘를 배알하고 즉위를 고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④ 즉위식 전후로 관정도량, 보살계와 같은 불교식 즉위의례가 있었다.

고대국가의 즉위의례의 경우 선왕이 죽은 뒤 정치적·행정적 권력을 획득하는 세속적 즉위의례와 즉위의 정당성과 신왕의 신성성을 보증 받고 공포하는 종교적 즉위의례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라의 경우도 신왕의 즉위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쳤다. 처음 단계는 선왕이 죽은 후 왕위를 계승하고 왕으로서 권력과 권위를 취득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새로이 국왕에 오른 자의 지위의 정당성과 그 지위 내력의

78) 『高麗史』 지3 예1 길례대사 「親祀儀」; 『高麗史』 지22 예10 가례4 「宣麻儀」; 『高麗史節要』 권7 예종 4년 2월. “御乾德殿門 命將軍金賢林佐等 兩軍排陣闕之 賜酒及銀瓶.”

79) 『高麗圖經』 권5 궁전1 건덕전. “乾德殿 在會慶殿之西北 別有殿門 其制五間 視會慶差小.”; 『高麗史節要』 권9 인종 2년 7월, “遣使 冊李資謙爲亮節翼命功臣 [...] 朝鮮國公 [...] 王 出乾德殿門外 親傳詔書 百官 詣殿庭賀.”

80) 『高麗史』 신종 2년 5월 5일 무술. “命平章事奇洪壽 改寫大觀殿無逸篇.”; 『東文選』 권19 「書大觀殿黼座後障無逸圖上」.

81) 중국과 신라, 고려, 조선의 경우 신왕의 즉위가 빈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체미하, 앞의 논문, 17쪽 참조. 그러나 고려는 빈전 즉위가 아니었다.

82) 『世宗實錄』 흥례의식 「成殯」. “橫宮基于正殿中稍西.”; 「嗣位」. “文官一品以下位於勤政殿庭道東 宗親及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

83) 西嶋定生, 「漢代における即位儀禮」,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東京大學出版會, 1975), 419쪽; Howard J. Wechsler, 임대희 역, 앞의 책(2005), 198쪽.

신성성을 체득하고 공포하는 단계이다.⁸⁴⁾ 고려의 경우는 관정도량, 보살계와 같은 불교식 즉위례가 있었다.

즉위 전후에 강종, 원종, 충렬왕, 충선왕 등이 관정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고려 왕이 즉위식에서 관정도량을 개최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⁸⁵⁾ 여러 불경에서 왕의 관정과 전륜성왕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관정은 원래 인도에서 제왕의 즉위식 및 태자를 책봉할 때 그 정수리에 바닷물을 뿌리는 의식이었으나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제9지에서 제10지 범운지에 들어갈 때 제불이 지수(智水)를 보살의 정수리에 뿌려 범왕의 지위에 이르렀음을 상징하는 의식이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 전륜성왕이 태자에게 사해의 물을 길어다가 손수 태자의 정수리에 부음으로써 태자가 왕위의 직책을 받는 것과 같이, 수직보살 역시 부처님 지혜의 물을 정수리에 부음으로써 직책을 받은 내용으로 묘사되고 있다.⁸⁶⁾ 『불설륜왕칠보경』에서는 왕이 관정을 받고 윤왕(輪王)이 된다고 하였다.⁸⁷⁾ 『잡아함경』에서는 관정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올라 천하의 왕이 되고 자재로운 힘을 얻어 모든 적국의 행복을 받는다고 하였다.⁸⁸⁾ 『대방광십륜경』의 「관정유품」에서는 관정찰리대왕이 여러 가지 많은 공덕이 있어 전륜성왕이 되었으며 사천하를 다스린다고 하였다.⁸⁹⁾ 『기세경』 「전륜성왕품」에서는 전륜성왕이 관정하면 찰리주(刹利主)가 되고 15일에 달이 차고 재계하면 왕 앞에 금륜보가 나타나며, 이때 관정찰리전륜성왕은 “천륜보여, 내가 바로 전륜왕이니 아직 행복받지 못한 곳을 나를 위하여 행복시켜라”라고 한다는 것이다.⁹⁰⁾ 이처럼 관정은 태자가 왕위에

84) 나희라, 앞의 논문, 4-5쪽.

85) 고려 왕들은 즉위식에서 관정함으로써 세속적인 왕을 넘어 출세간적 범왕이 되어 밀교 전법과 교화의 大阿闍梨가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윤길, 앞의 책, 312-313쪽 참조.

86) 『大方廣佛華嚴經』 권제39 十地品(實叉難陀 譯, K0080). “如轉輪聖王所生太子 母是正后 身相具足 其轉輪王 令此太子 坐白象寶妙金之座 [···] 取四大海水 置金瓶內 王執此瓶 灌太子頂 是時即名受王職位 墮在灌頂刹利王數 即能具足行十善道 亦得名爲轉輪聖王 菩薩受職 亦復如是 諸佛智水 灌其頂故 名爲受職 具足如來十種力 故墮在佛數 佛子是名菩薩摩訶薩.”

87) 『佛說輪王七寶經』(K1422) 권제1. “有刹帝利大灌頂王 已受灌頂 得輪王位 威德自在 人所尊重 出現世間 其王出時 有七寶現.”

88) 『雜阿含經』(K0650) 권제46. “刹利大王 灌頂居位 王四天下 得力自在 於諸敵國無不降伏.”

89) 『大方廣十輪經』(K0058) 권제3 灌頂喻品. “一切天龍 夜叉 乾闥婆 [···] 摩睺羅伽 皆悉供養已 各相謂言如是 灌頂刹利大王 多諸功德 應爲轉輪聖王 統四天下 我等應當 建立此王 治國政事.”

오르는 의식이며 전문성왕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관정은 밀교의 주요 의식이었다. 천책(1206-?)의 『선문보장록』에 의하면 불교의 교학은 현교, 밀교, 심교의 세 가지이며, 이 중 밀교에 대해 유가수행, 관정법, 오부만다라, 호마법, 삼밀가지, 만다라법 등을 언급하고 있다.⁹¹⁾ 따라서 고려의 즉위식에서 관정도량을 거행한 것은 밀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위식에서 관정도량이 열린 것은 사료에 나타난 대로 무신집권기 이후, 즉 강종 즉위 이후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무신집권기에 미약해진 왕권이지만 그 신성성을 불교 의식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주며 왕권을 보장한다는 무신집권자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⁹²⁾

한편 고려 왕들은 즉위 후 원년에 보살계를 받았다.⁹³⁾ 그런데 중국의 경우 보살계는 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왕이 보살계를 받은 일은 남조의 송에서 시작되어 제에서도 성행하였고 수·당대도 널리 유행하였다. 『범망경』에 의하면 보살계는 모두 받을 수 있는 대승계로서 일단 받으면 보살종자 또는 불자가 되고 제불(諸佛)과 동일한 위치에 오르게 된다.⁹⁴⁾ 예를 들면 양 무제가 보살계를 받고 황제보살로 등극한 것은 자신이 부처와 동위에 드는 전문성왕, 즉 법왕임을 드러내는 정치적 의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⁹⁵⁾ 신라의 경덕왕(742-765)도 보살계를

90) 『起世經』(K0660) 권제2 轉輪聖王品第三. “轉輪聖王 出閻浮洲 以水灌頂 作剎利主 於十五日 月盛圓滿受齋之晨 洗沐清淨 [...] 是時 王前有金輪寶 忽然來應 [...] 爾時 灌頂剎利轉輪聖王 [...] 作如是言 汝天輪寶 我身定是轉輪王者 未降伏處 爲我降伏 彼天輪寶 應聲即轉 爲欲降伏未伏者.”

91) 天頊, 『禪門寶藏錄』卷上 禪教對辨門. “教者不倫有三疇類 一顯教者 諸乘經律論也 二密教者 瑜伽灌頂五部護摩三密曼拏羅法 三心教者 直指人心見性成佛禪法也 [...] 此之三教三輪三祖 自西而東化凡而聖流十五代.”; 韓國學文獻研究所 편, 『萬德寺誌』(아세아문화사, 1977), 223쪽. 『禪門寶藏錄』은 충렬왕 20년(1294)에 천책이 편찬한 것으로 여러 선사의 어록을 발췌하여 기술하고 인용 서목을 밝혔다.

92) 즉위례의 관정 의식은 서양 중세의 대관식에서 거행한 塗油禮와 유사성이 있다. 대관식에서도 신의 은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도유례는 신성적 왕, 왕의 신성성을 잘 보여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姜治遠, 「神政의 王權과 戴冠式에 관한 研究: 9-11세기 下向의 統治原理를 중심으로」, 『史學志』 16(1982) 참조.

93) 안계현, 앞의 논문; 안계현, 『한국불교사연구』(동화출판공사, 1982); 한정수, 「고려시대 국왕 ‘菩薩戒’와 6월 15일 受戒의 의미」, 『역사학보』 220(2013). 원종을 제외하고 즉위식에서 보살계를 받은 사례는 없고, 원년에 받은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그런데 원종은 고종 사후 뒤늦게 해를 넘겨 귀국하여 즉위하였으므로 사실상 원년에 보살계를 받은 셈이다.

94) 嚴耀中, 『佛教戒律與中國社會』(上海古籍出版社, 2007), 75-76쪽.

95) 蘇鉉淑, 「梁 武帝의 佛教政策」, 『韓國古代史探究』 2(2009), 140쪽.

받았다.⁹⁶⁾ 『범망경』에 의하면, 불자가 국왕위나 전문왕위, 백관위 등에 나아갈 때에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하며, 보살계를 받으면 모든 귀신이 왕과 백관을 구호하고 제불이 환희한다⁹⁷⁾고 하였다. 고려시대 국왕들이 보살계를 받고 ‘보살계제자’라고 칭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고려 국왕들은 대대로 6월 15일에 궁중에서 보살계도량을 열어 보살계를 받았다.⁹⁸⁾ 태조 왕건과 광종이 ‘보살계제자’라고 칭하고 있다.⁹⁹⁾ 국왕이 보살계를 받는다는 것은 보살의 자격을 새로 얻거나 보살의 자격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살계도량은 대대로 역대의 국왕이 스스로 불제자임을 다짐하고 널리 선언하는 의식이기도 하였다.¹⁰⁰⁾ 국왕이 곧 보살임을 내세움으로써 어떠한 통치도 합리화시킬 수 있고 백성들의 복종을 유도할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즉, 양 무제의 사례에서 보듯 ‘황제보살’의 관념을 통해 전 국민이 불교신자인 고려사회에서 불교를 매개로 이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처럼 보살계사상은 왕권을 합리화하고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지배자들의 선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일면도 있었을 것이다.¹⁰¹⁾

그런데 즉위의례로 관정도량이나 보살계를 거행한 것은 고려 국왕의 신성 관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태조 왕건은 천명을 받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태조의 시호는 “신성대왕(神聖大王)”¹⁰²⁾이었으며 최승로는 상서에서 “태조신성대왕이 천명을 받으니 사람들이 태조의 성덕을 알아 마음으로 따랐”다고 하였다.¹⁰³⁾ 태조 이래의 신성 관념은 후대에도 이어졌으며 특히 태조의 혈통을 이은 후대 왕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즉, 국왕에게 올리는 상소와 공문서에 ‘신성제왕(神聖帝王)’¹⁰⁴⁾이라고

96) 『三國遺事』 의해5 진표전간.

97) 『梵網經』(『大正新修大藏經』 24), p. 1005 上. “佛言 佛子欲受國王位時 受轉輪王位時 百官受位時 應先受菩薩戒 一切鬼神救護王身百官之身 諸佛歡喜.”

98) 안계현, 앞의 논문; 안계현, 앞의 책; 한정수, 앞의 논문.

99) 『東人之文四六』 권8 佛疏, 「神聖王親製開泰寺華嚴法會疏」. “菩薩戒弟子大義軍使特進檢校太保玄免州都督高麗國王王諱.”; 이기백 편저,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일지사, 1987), 「大般若波羅密多經 寫經 卷首」. “菩薩戒弟子高麗國王王昭.”

100) 안계현, 앞의 책, 116쪽.

101) 최원식, 「신라 보살계사상사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152-154쪽.

102) 『高麗史節要』 권1 太祖神聖大王 26년 6월. “戊申 發喪於詳政殿 [···] 庚午 上諡曰神聖大王 廟號太祖.”

103) 『高麗史節要』 권2 中宗 원년 6월. “崔承老上書曰 [···] 伏審我太祖神聖大王之御極也 時當百六 運協一千 當初翦亂夷凶 天生前主 而假手在後 膺圖受命 人和聖德以歸心.”

칭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인종이 조서를 내려 “제왕의 덕은 겸손이 첫째”라고 하여 이를 금지하게 하였으나 이것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신성 관념은 태조 왕건 이래 불교의 호위를 강조하였던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즉, 태조 이래 고려 왕들은 부처, 혹은 신·불의 호위를 강조하여왔다.¹⁰⁵⁾ 또한 고려 속악인 〈풍입송〉에서는 “불보천조(佛補天助)”라 하여 국왕에 대한 불·천의 호위를 칭송하였다.¹⁰⁶⁾

요컨대 고려 사왕들은 불교의례를 통해 신성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¹⁰⁷⁾ 이는 태조 왕건 이래의 신성제왕 관념과 불교의 호위를 강조하였던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고려 국왕은 보살계나 관정도량 등을 통해 신·속(神俗)을 아우르는 신성한 존재였음을 즉위의례에서 나타내 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신집권기 이래 거행된 관정의식은 취약한 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신집권기 무신집정자에 의한 왕위 교체, 원 간섭기의 원에 의한 즉위와 복위는 국왕의 신성성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즉위식에서 거행된 관정 의식은 신성성에 대한 상징성만 가질 뿐 오히려 왕권의 취약함을 불교의례로 포장하려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IV. 맺음말

왕조의 통치 근간은 국왕이었다. 따라서 왕권의 안정적인 계승은 국가의 안정과 지속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즉위의례의 거행을 통해

104) 『高麗史節要』 권10 인종 16년 2월. “詔曰 帝王之德 謙遜爲先 故老子曰 王公 自稱孤寡 人不穀 漢光武詔上書 不得言聖 今臣下 尊君推美 稱謂過當 甚不合理 今後 凡上章疏 及公行案牘 毋得稱神聖帝王.”

105) 예를 들면 태조는 「훈요」에서 ‘諸佛護衛之力’을 강조하였고, 의종은 ‘崇奉佛法 敬信神祇’ 하였다고 한다.

106) 『高麗史』 지25 악2 속악 「風入松」. “海東天子當今帝 佛補天助數化來.”

107) 제석도량이 즉위의례의 성격을 지녔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안지원, 앞의 책, 264-267쪽 참조. 그러나 즉위의례라기보다는 제석천의 천신신앙이 전통의 제천행사와 합하여 나타난 연중 행사의 성격을 지닌 도량이라는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金炯佑, 「高麗時代 國家的 佛敎行事에 대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2), 140쪽 참조.

새로운 국왕의 탄생을 천명함으로써 왕위 계승의 합법성을 구현하고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고려의 즉위의례는 조선과는 달리 의례로 정리되어 전해지지 않아 역사서에 그 대략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고려 국왕의 즉위의례는 분명히 존재하였고, 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 국왕의 즉위의례는 대체로 고명(유명) → 홍 → 즉위식 → 반조서 → 고즉위례 → 대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고려의 즉위의례는 신라, 조선의 즉위의례와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뚜렷하였다. 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에서는 공통적으로 즉위 교서를 반포하였고 즉위 후에는 사면하고 문무관과 백성들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즉위식 후에는 왕실 조상숭배와 관련된 신궁, 시조묘, 태묘·종묘 등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 즉위를 고유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의 경우에는 유교와 국새의 전달이 즉위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국새의 수수는 곧 새 국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중요한 행위였다. 즉위식에서 국새를 받음으로써 즉위의 상징성이 완성되었다. 그렇지만 차이점도 뚜렷하여 신라와 조선의 즉위의례가 빈전에서 성복 후에 거행되었던 것에 비해 고려의 즉위의례는 당일 즉위이고 빈전이 아닌 중광전(강안전), 대관전과 같은 특정한 전각에서 거행되었다. 그리고 즉위를 고하는 의례도 고려 사왕이 주로 경령전에 고하는 것에 비해 조선 왕은 종묘에 고하였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고려의 경우 불교 의식이 즉위의례의 하나로 거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고려 사왕은 원년에 보살계를 받았으며, 무신정권기 이후의 즉위식에서는 관정도량을 거행하였다. 고려 사왕은 불교의례를 통해 왕권의 신성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태조가 「훈요」에서 ‘제불호위’를 강조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태조 이래 고려 왕들은 신·불의 호위를 강조하여왔다. 그리고 고려 국왕에게 올린 공문서에서 신하들은 ‘신성제왕’이라 칭하고 있어 태조 이래의 신성 관념이 후대 왕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려 국왕은 불교의례를 통해 신·속을 아우르는 신성한 존재임을 즉위의례에서 나타냈는데, 이것이 고려 즉위의례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무신집권기 이래 거행된 관정의식은 취약한 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무신집권기 무신집정자에 의한 왕위 교체, 원 간섭기의 원에 의한 즉위와 복위는

국왕의 신성성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즉위식에서 거행된 관정 의식은 신성성에 대한 상징성만 가질 뿐 오히려 왕권의 취약함을 불교의례로 포장하려는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왕권의 상징인 국새는 원 간섭기에 원에 의해 수여되고 회수되었다. 원에 의지에 따라 수여되는 국새는 곧 즉위의 결정이었고 그 회수는 왕위의 박탈이었다. 왕권의 상징이었던 국새는 원 간섭기에 들어 원에 의해 수여와 박탈이 이루어져 이 시기 즉위례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姜治遠, 「神政的 王權과 戴冠式에 관한 研究: 9-11세기 下向的 統治原理를 중심으로」. 『史學志』 16, 1982.
- 金明正, 「灌頂信仰에 對한 研究-高麗時代를 中心으로」. 『釋林』 11, 1977.
- 김수연, 「고려 관정도량의 사상적 배경과 특징」. 『한국사상사학』 42, 2012.
- 김인호, 「고려시대 국왕의 장례절차와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29, 2010.
- 김지영, 「조선시대 사위의례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1, 2012.
- 김지영 외, 『즉위식, 국왕의 탄생』. 돌베개, 2013.
- 나희라, 「신라의 卽位儀禮」. 『한국사연구』 116, 2002.
- 박례경, 「德治의 상징체계로서의 유교국가의 卽位儀禮」. 『한국실학연구』 21, 2011.
- 이계황, 「일본 고대 국가의례 연구 서설, 즉위례와 대상제」. 『일본역사연구』 19, 2004.
- 이정란, 「高麗王家の 龍孫意識과 왕권의 변동」. 『韓國史學報』 55, 2014.
- 張寅成, 「南朝의 喪禮 研究」. 『백제연구』 32, 2000.
- 채미하, 「한국고대의 궁중의례, 즉위례와 조하례」. 『史學研究』 112, 2013.
- 한정수, 「고려시대 국왕 ‘菩薩戒’와 6월 15일 受戒의 의미」. 『歷史學報』 220, 2013.
- 金子修一, 「中國古代의 卽位儀禮と郊祀宗廟」. 『中國古代皇帝祭祀の研究』, 岩波書店, 2006.
- 渡邊義浩, 『後漢における儒教國家の成立』. 汲古書院, 2009; 김용천 옮김, 『후한 유교 국가의 성립』. 동과서, 2011.
- 尾形勇, 「中國의 卽位儀禮」. 『東アジアにおける儀禮と國家』, 學生社, 1982.
- 上川通夫, 「中世의 卽位儀禮と佛教」. 『日本中世佛教形成史論』, 校倉書房, 2007.
- 西嶋定生, 「漢代における卽位儀禮」.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1975.
- 松本郁代, 『中世王權と卽位灌頂-聖教のなかの歴史敘述』. 森話社, 2005.
- Wechsler, Howard J., *Offerings of Jade and Silk: Ritual and Symbol in the Legitimation of the T'ang Dynasty*. Yale University, 1985; 임대희 역, 『비단갈고 주옥같은 정치』. 고즈윈, 2005.

국 문 요 약

사왕은 즉위의례를 통해 왕위 계승의 합법성을 구현하고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고려의 즉위의례는 조선과는 달리 의례로 정리되어 전해지지 않아 역사서에 그 대략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고려 국왕의 즉위의례는 분명히 존재하였고, 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 국왕의 즉위의례는 대체로 고명(유명) → 홍 → 즉위식 → 반조서 → 고즉위례 → 대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고려시대의 즉위의례는 신라와 조선의 사례와 비교해 여러 가지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에서는 즉위 교서를 반포하였고 즉위 후에는 사면하고 문무관과 백성들에게 은전을 배풀었다. 즉위식 후에는 왕실 조상숭배와 관련된 신궁, 시조묘, 태묘·종묘 등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 즉위를 고유(告由)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은 유교와 국새의 전달이 즉위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차이점도 뚜렷하여 조선의 즉위의례가 성복 후에 빈전에서 거행되었던 것에 비해 고려의 즉위의례는 당일 즉위이고 빈전이 아닌 중광전(강안전), 대관전과 같은 특정한 전각에서 거행되었다. 그리고 즉위를 고하는 의례도 고려 사왕이 태묘(종묘)보다는 주로 경령전에 고하는 것에 비해 조선 왕은 종묘에 고하였다.

고려시대 즉위의례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 의식이 즉위례의 하나로 거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고려 사왕은 즉위식에서 원년에 보살계를 받았으며, 무신정권기 이후의 즉위식에서는 관정도량을 거행하였다. 고려 사왕은 불교의례를 통해 신성성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태조 이래 고려 왕들은 신성 관념을 형성하여 지속해 나갔는데 특히 제불, 혹은 신·불의 호위를 강조하였다. 이에 고려 사왕은 불교의례를 통해 신·속을 아우르는 신성한 존재임을 즉위의례에서 나타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신집권기 무신집정자에 의한 왕위 교체, 원 간섭기의 원에 의한 즉위와 복위는 국왕의 신성성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무신집권기 이래 거행된 관정의식은 취약한 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왕권의 상징인 국새는 원 간섭기에 원에 의해 수여되고 회수되었

다. 원의 의지에 따라 수여되는 국새는 곧 즉위의 결정이었고 그 회수는 왕위의 박탈이었다. 이는 고려 즉위례의 가장 큰 변화 요소였다.

투고일 2015. 3. 20.

심사일 2015. 4. 16.

게재 확정일 2015. 5. 14.

주제어(keyword) 고려(Goryeo), 국왕(king), 즉위의례(entronement), 즉위식(entronement ceremony), 전국보(Abhiseka), 관정도장(Abhiseka rituals), 보살계(esoteric Buddhism), 태묘(Tae-myō), 경령전(Gyeong-ryeong-jeon)

The Enthronement Ceremony in Goryeo Dynasty

Kim, Cheol-woong

This thesis is the study of enthronement, rituals of taking a throne of Goryeo Dynasty. The main contents and the procedure was recorded in Goryeo History. The Enthronement Ceremony in which the new king succeeded to the throne was performed soon after the preceding king's death. At this ceremony, the new king received regalia, and the new king promulgated amnesty. Through Enthronement Ceremony the new king got sovereign power of king.

The Enthronement Ceremony was concluded with performing the rite in the royal ancestral shrine, Tae-myŏ(太廟) or Gyeong-ryeong-jeon(景靈殿). Performing that ceremony, the new king got justness of king's authority. In Goryeo, also Abhiseka rituals(灌頂道場) as the enthronement ceremony were held to increase the new king's authority. Abhiseka originated from the ancient enthronement ceremony of India. It has been considered to be a very important ceremony to inherit the esoteric Buddhism. In Goryeo Abhiseka rituals as the enthronement ceremony appeared to raise the royal authority.

Through enthronement ceremony, the descend kings were just the succession of lineage, also they had to be true ruler. Therefore King of Goryeo should show that he was a deified ruler.